

의정부지방법원 2017. 6. 1 선고 2016나58455 판결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등]

재판경과

의정부지방법원 2017. 6. 1 선고 2016나58455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6. 9. 7 선고 2015가단20865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A

피고, 항소인B

변론종결 2017. 5. 11.

판결 선고 2017. 6. 1.

제1심판결의정부지방법원 2016. 9. 7. 선고 2015가단20865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7, 10, 6, 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4m² 지상 건물을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하고, 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4, 5, 6, 10, 7, 8,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88m²를 인도하고, 다. 398,610원 및 2016. 1. 22.부터 가항 및 나항 기재 건물철거의무와 토지인도의무의 이행완료일까지 연 238,08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판사김성곤

판사정동주

판사이준구

별지